

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 읍·면·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04. 11. 22(월)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1월 8일 이천시장 제출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9일
다. 상정일자 : 제73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 제3차(2004. 11. 20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종화)

가. 제안이유

- 2003년 9월 25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 위임조례중 주민등록증 용지관리,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 및 주민등록 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등록사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에 대한 규정의 변경(안 제2조).
 -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·초본의 교부에 관한 권한을 시장에게도 부여함.
(기존 읍·면·동장 → 시장·읍·면·동장까지 확대)
- 위임사무에서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(안 제2조제1호).
 -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증발급 센터를 설치하여 카드식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를 대행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의 사항을 삭제함

-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 추가(안 제2조제2호).
 -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경우 목적 및 근거, 자료의 범위 및 승인 절차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자료관리의 근거 명시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해수)

- 이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, 동 조례 중 주민등록증 용지관리,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효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